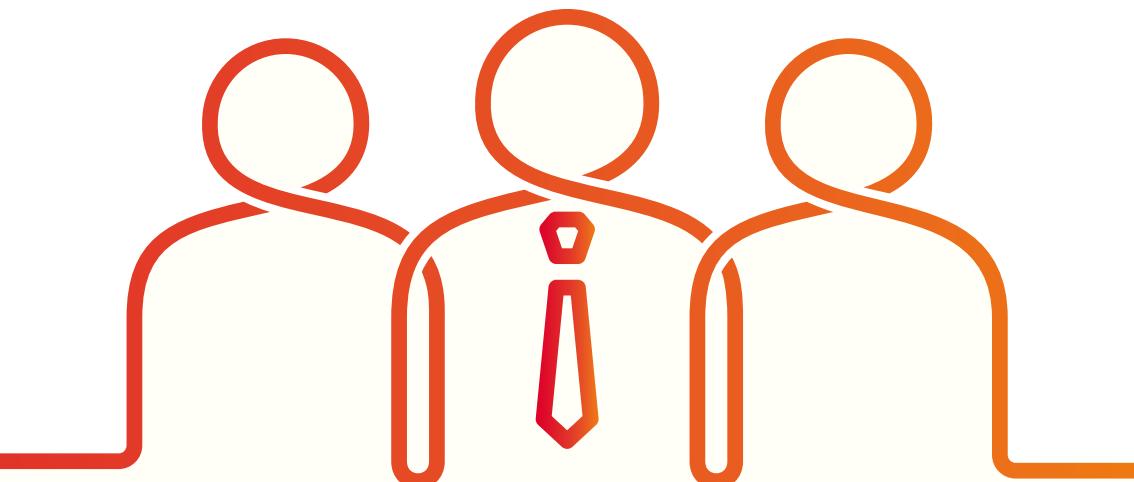


SK 이노베이션 계열

공정거래 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은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의 구성원들을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공정거래 가이드북

Contents

- 04 발간사
- 06 공정거래 가이드북 맵
- 07 경쟁사와의 접촉
- 19 기업결합
- 31 계열회사와의 거래
- 41 제품 판매·대리점 거래
- 61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81 협력회사와의 거래
- 91 자회사 설립·지분 취득
- 99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들의 기본 의무**"

공정거래 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발간에 즈음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구성원 여러분,

이제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정거래법(경쟁법)의 준수는,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공조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경쟁우위의 확보를 넘어 기업 생존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과 그 자회사들은 구성원들이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공정거래 가이드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다수가 제·개정되었고, 주요 사실관계나 판례/심결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구축의 일환으로 2022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나 의문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Compliance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가이드북이 이를 위한 든든한 안내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 7. 1.

SK이노베이션 자율준수관리자 이병래

이 | 병래

MAP

공정거래 가이드북 맵

업무 수행 활동을 영역별로 나누어 각 업무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가이드북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1. 경쟁사와의 접촉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 정보 수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마케팅, 구매, 생산, 연구개발, 인력 포함 전사 조직
2. 기업결합	국내 및 해외에서 M&A,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JV설립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전략기획, 마케팅
3. 계열회사와의 거래	SK계열회사와의 모든 거래(SKI계열간의 거래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마케팅, 구매, IT 조직 등 계열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4. 제품 판매· 대리점 거래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대리점 포함)에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마케팅
5.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 포함)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 제조 및 용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규격·품질을 지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거래(임가공을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구매, 하도급거래 (수령·검수 포함)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6. 협력회사와의 거래	우리 회사가 물품(판촉물, 사무용품, 기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건설·설비·연구 등과 관련하여 공사·설계·수리·기타 용역(CLX 정기보수 등)을 위탁하는 모든 협력회사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구매, 생산, 연구개발, 협력회사 관리조직 등 협력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7. 자회사 설립· 지분 취득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중간지주회사인 SKI와 SKI계열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지분 취득 등의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전략기획, 사업개발, 마케팅
8.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재무, 공시 담당조직, 자회사 관리조직 및 계열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공정거래 가이드북

01

경쟁사와의 접촉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 정보
수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케팅, 구매, 생산, 연구개발,
인력 포함 전사 조직



경쟁사와의 접촉 가이드

Do's & Don'ts



-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절대 금지됩니다.
- 대면, 전화, E-mail, 문자메시지 등 유형을 불문하고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불가피하게 경쟁사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 접촉 전에 공정거래 Compliance 담당부서(이하 “공정거래 Unit”)에 접촉 목적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 경쟁사 접촉 시에는 가격, 생산량 등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 접촉 시 담합과 관련된 주제의 논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기록(회의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일체의 정보교환은 금지되며, 입찰 관련 Checklist를 작성하여 공정거래 Unit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쟁사의 동향을 경쟁사로부터 직접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와의 접촉 가이드 |

세부 실천 사항

1/ 담합 행위의 절대적 금지

1.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래의 사항에 대한 합의는 절대적으로 금지됨.

- 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할당하고 불가침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다른 회사와 직원에 대한 보상, 급여(금액, 수준 또는 범위 포함), 보너스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하여 소통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및 다른 회사와 서로의 직원을 유인/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시 승인을 받도록 합의하는 행위(소위 “No Poach Agreements”)

2.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 따른 묵시적 합의도 금지됨.
3. 경쟁사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대리점 등과의 재판매가격 고정, 지역 및 고객의 할당 등의 합의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에 따라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으로 추가되었으므로, 경쟁사와 민감한 정보의 교환도 원칙적으로 금지됨.
5. 합의 후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도 위법하며 과징금이 부과됨.

2/ 경쟁사 임직원 접촉 금지

1. 대면, 전화, E-mail,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칙적으로 경쟁사와의 접촉 금지.
2.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가한 사실 그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증거가 되고, 경쟁사의 담합 자진신고 시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

경쟁사와의 접촉 가이드

3. 공식적인 모임, 경조사, 거래처, 사적 모임 등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에도 가격, 생산량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됨.

경쟁사 접촉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검토 필요

- 접촉 전 접촉 일시, 목적, 대상, 논의내용에 대한 공정거래 Unit의 사전검토가 필요함.
- 공정거래 Unit은 접촉의 불가피성 등 담합 Risk를 검토 후 접촉 가능 여부 회신.
- 아래와 같은 효율성 창출을 위한 경쟁사와의 협업 활동도 모두 담합 Risk가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사전검토가 필요함.

- 합작투자, 인수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 기업결합행위 관련 분야
- 판구매,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 벤치마킹을 포함한 경쟁사와의 모든 정보교환

경쟁사 접촉 시 행동 수칙

- 경쟁사와의 논의 시작 전에, 공정거래 준수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고지해야 함.
(첨부2 [공정거래 준수선언] 참조)
-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논의 및 정보교환은 금지됨.

논의 불가 사항(예시)

- 가격정보 : 제품가격, 원가, 인상·인하계획, 인상을, 할인·할증률, 이윤율 등
- 시장정보 : 시장 전반적인 수급상황 등
- 거래조건 정보 : 품질, 거래장소, 거래방법, 운송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
- 생산량 정보 :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비율 등
- 설비 관련 정보 : 설비 신·증설 계획, 장비도입 계획 등

- 상대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 즉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기록하고 공정거래 Unit에 알려야 함.
- 접촉 시 논의 불가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기록(첨부3 [회의록]) 양식 활용, 담당자 서명)을 작성해 공정거래 Unit에 전달해야 함.

경쟁사와의 접촉 가이드

5. 입찰 관련 금지 사항

1. 입찰참가자 간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는 절대적으로 금지됨.

- 최저입찰가격, 발주의 수량·비율
- 낙찰예정자, 들러리

2. 입찰참가자 간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정보교환이 금지됨.

- 설계 또는 시공방법, 발주 정보, 사업활동 실적, 수주 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
-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사실, 입찰참가 여부, 수주의욕에 대한 정보

3. 매 입찰마다 사전에 「입찰 참여 시 Checklist」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공정 거래 Unit에 제출하여야 함.

6. 경쟁사 동향 수집 및 사내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경쟁사 동향을 경쟁사를 통해 직접 수집해서는 안 되며, 언론보도, 공공문서 등 시장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해야 함.
- 경쟁사 관련 내용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의 출처를 분명히 기재해야 함.
- 담합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관용 표현 사용 금지.
– 과당경쟁 방지, 업계 자율조정, 협의, 협력, 논의, 공동대응, 의견 조율 등
- 업무 수첩, 캘린더 작성을 포함해 모든 문서의 작성 시 언제든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할 것.
-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자료를 축적, 보관해야 함.
- 불필요한 과거 자료는 주기적으로 정리, 본인이 작성자가 아닌 문서 보관 시 담합 Risk 여부를 공정거래 Unit과 적극 상의하여 재확인해야 함.

그 밖의 주요 사항

1/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와 Amnesty Plus 제도

- Leniency 제도 :** 담합을 행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완전 면제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경.
- Amnesty Plus 제도 :**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면.
- 담합의 과정에서 경쟁사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접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국제카르텔

- 외국사업자 간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카르텔은 경쟁법의 역외적용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세계 경쟁당국간의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국제카르텔의 처벌은 한 국가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연쇄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제재가 확대되고 있고, Leniency 제도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업 영위 시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EU, 미국 등에서 최근 과징금 및 벌금 부과금액을 인상. 특히, 미국의 경우 공모기업은 물론,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 EU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정보교환과 의식적 동조행위(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를 담합으로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유럽시장에서 경영활동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함

3/ 법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2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한도).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한국 공정위 기준, 해외 경쟁당국도 별도 중복 제재 가능



다음 질문들은
경쟁사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경쟁사와 접촉하더라도 '담합'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경쟁사 접촉 자체로도 Ris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담합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합니다. 경쟁사와 어느 수준까지 대화를 하거나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구성원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접촉 자체만으로도 규제당국의 시각에 따라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둘째, 경쟁사 접촉 이후 우연히 양사 간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변경되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해당 경쟁사 접촉이 유력한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설사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셋째, 경쟁사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은 거짓으로 자진신고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쟁사에서 먼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을 때도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나요?

- 경쟁사가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반드시 경쟁사 접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 사실을 공정거래 Unit에 통지하고,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경쟁사와의 접촉 가이드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대리점을 통해
수집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요?**

최근의 담합 규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정보교환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는 경쟁사에게 전달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사실상의 위법한 정보교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리점 등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해당 정보 수집 행위는 경쟁사와 직·간접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문서 생성 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문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특정 물품을 구매해
구매가격을 낮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공정위는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구매의 경우 그 행위의 효율성이 경쟁제한성 보다 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 간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담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구매 시에는 공정거래 Unit과 사전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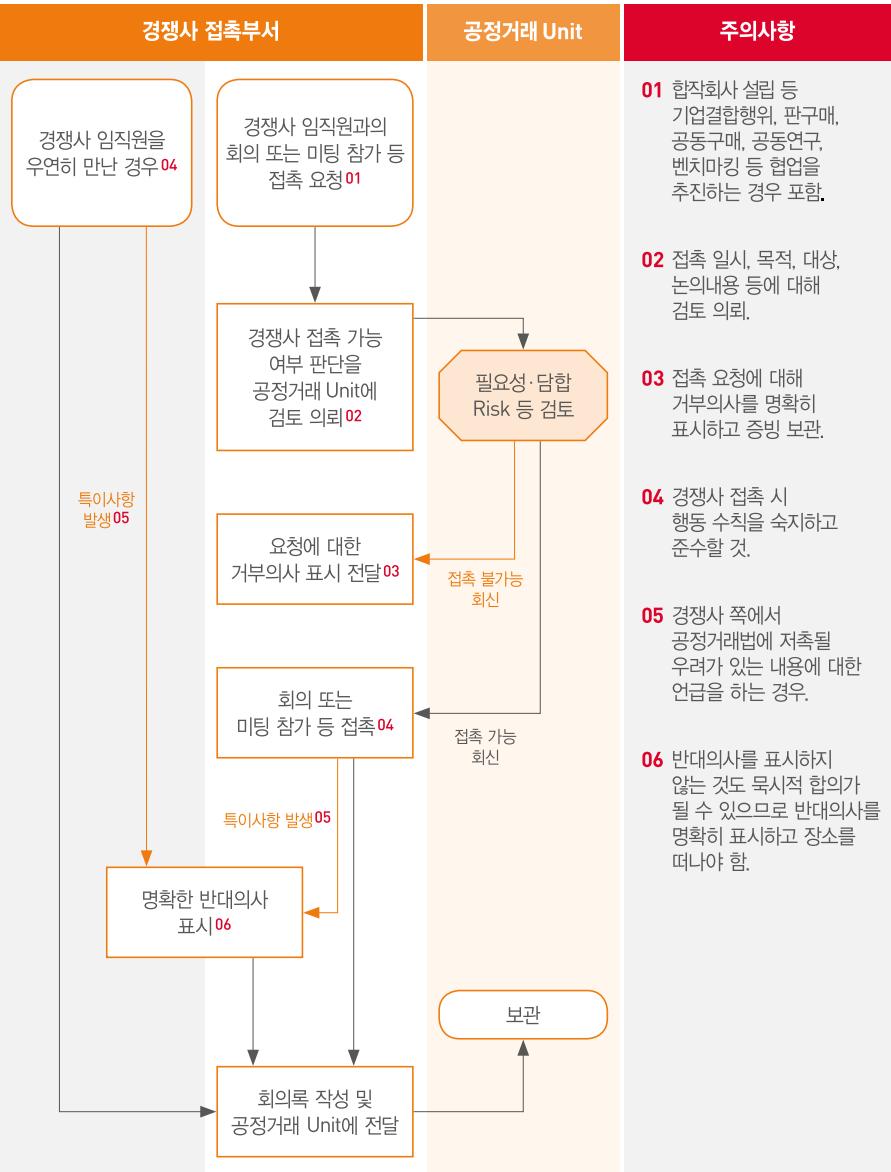
**정부의 행정지도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법인가요?**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간접적으로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담합에 해당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행정지도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그 목적, 수단, 내용 등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고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사와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의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 Unit과 사전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첨부 ①

경쟁사 접촉 업무 흐름도



공정거래 준수선언

(첨부2)

경쟁사와의 논의 시작 전, [공정거래 준수선언]을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상황에 맞게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고지할 수 있음.

〈예〉 “우리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준수선언 (Antitrust Disclaimer)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사전에 정해진 Agenda에 국한되며, 한국 공정거래법 및 해외경쟁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그 어떤 논의나 정보교환도 이루어져서는 아니 됨을 선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본 회의는 즉시 중단됩니다.

논의 및 정보교환이 금지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격정보 : 제품가격, 원가, 인상·인하계획, 인상을, 할인·할증률, 이윤율 등
- ▶ 시장정보 : 시장 전반적인 수급상황 등
- ▶ 거래조건 정보 : 품질, 거래장소, 거래방법, 운송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
- ▶ 생산량 정보 :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비율 등
- ▶ 설비 관련 정보 : 설비 신·증설 계획, 장비도입 계획 등
- ▶ 입찰 관련 정보 : 투찰여부, 투찰가격, 설계 또는 시공방법

회의록

(첨부3)

경쟁사 접촉 시 논의 불가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기록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공정거래 Unit에 전달해야 함.

회의록			
일시	당사 참석자	타사 참석자	
장소 (접촉방법)			
논의내용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사전에 검토된 Agenda에 국한되며, 공정거래법 및 해외경쟁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논의나 정보교환은 불가함.		
확인	본인은 상기 작성된 내용 이외에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당사 참석자	소속/성명 : (서명)
	타사 참석자 (가능한 경우)	소속/성명 :	(서명)

공정거래 가이드북

02

기업결합

국내 및 해외에서 M&A,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JV설립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략기획, 마케팅



기업결합 가이드

Do's & Don'ts



- M&A, JV설립, 영업양수도, 임원겸임, 주식인수 등의 기업결합행위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 회사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행위의 종결일 전에 사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단,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 경쟁당국의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합병등기, 양수대금 지급, 주식인수대금 또는 출자금 납입 등 기업결합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불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승인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의 요건과 계열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이를 공시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행위를 포함하는 Project를 진행할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 Unit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기업결합 가이드 |

세부 실천 사항

1/ 신고대상인 기업결합행위 유형

1. 다음의 행위들은 기업결합행위로서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 결합신고를 진행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식취득, 소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겸임]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합병] 다른 회사와의 합병
- [영업·자산 양수]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JV설립]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2. 각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의무 존부, 신고시기, 신고절차, 심사기간, 승인가능성 및 경쟁사와의 기업결합 추진 시 경쟁사 접촉 관련 주의사항 및 공시 의무 존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 Unit에 사전검토 요청 필수.

2/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신고 요건과 심사기간

1.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신고 요건과 심사기간은 모두 상이하고,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개별 검토하여 Project 스케줄에 반영할 것.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외국 회사의 경우 추가로 국내매출 기준 300억을 넘는 경우)
- 피취득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위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i) 거래금액(인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ii) 상대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에서 상당 수준으로 활동 시(예: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하였고, 관련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부과됨
- 심사기간 : 일반심사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90일 연장가능, 자료보정 기간 제외), 간이심사의 경우 15일

3/ 사전신고 의무와 승인 통지 전 이행행위 금지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인 우리 회사는 임원겸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결합행위의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함.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기업결합 완료행위(합병등기, 양수대금 지급, 주식인수대금 또는 출자금 납입 등)가 금지됨.

4/ 기업결합 심사와 승인 가능성

1.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사업·자산의 일부 매각 등)이 내려질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며, 회사가 경쟁제한성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결합이 불승인될 수 있음.

경쟁제한성 추정 기준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됨
 -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or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10% 미만인 자 제외)
 -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 분야에서 제1위일 것
 - ▶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것
- 대규모회사가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됨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 결합
 - ▶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5/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1.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승인가능성이 높음.
2. 각 국가의 경쟁당국마다 별개의 경쟁제한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승인가능성에 대한 개별 검토 필요.

수평결합의 경우

- ▶ 경쟁제한성 추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or
- ▶ HHI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or
- ▶ HHI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or

수직 또는 혼합결합의 경우

- ▶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

6/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의무 이행 (Ch.8 참조)

1. 기업결합신고 외에 기업결합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위 주관 공시 대상인지 사전검토 필요.
2. 공시 의무 존재 시 공시 적시 이행 필요.

7/ 기업결합 시 계열편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제외) 신고 이행 (Ch.7 참조)

1. 기업결합행위로 SK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회사가 발생하는지 사전검토 필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여부 함께 검토).
2. 계열편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제외) 신고 적시 이행 필요.

8/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 ▶ 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인 경우
- ▶ 기업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 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 ▶ 단순투자활동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부동산투자 회사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등)
- ▶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 ▶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그 밖의 주요 사항

1 계열회사간 흡수합병 시 공정거래법상 절차적 유의 사항

- 기업결합신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적시 이행이 필요함.
- 아래의 공정거래법상 절차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할 것.

- [기업결합신고] 사전신고, 간이신고 대상
- [계열회사 제외 신고]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는 계열회사 제외 신고 필요
- [비상장사 주요 사항 공시]
 - ▶ 인수회사는 회사합병결정에 대한 공시 필요
 - ▶ 합병으로 유상증자 발생 시 증자결정에 대한 공시 필요
 - ▶ 합병으로 해외계열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그 인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재무구조변동사항에 대한 공시 필요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합병을 위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필요

2 법 위반 시 제재

-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당해 행위를 금지하는 불승인 조치 또는 영업 방식의 제한, 영업·자산의 양도, 주식 처분 등의 조건부 승인 조치가 부과됨.
- 심사결과에 반하는 기업결합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불승인 등의 시정조치 미이행 시 1일당 기준금액의 1만분의 3 범위 내, 임원겸임의 경우 1일당 200만원 범위 내
- 과태료 :**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기 제재는 한국 공정위 기준이며, 해외 경쟁당국도 별도 중복 제재 가능



다음 질문들은
기업결합신고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SK의 경우 이행완료일 전까지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 중 계열회사간 임원 겸임의 경우와 계열회사간 주식취득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는 기업결합신고 대상 외에도 공정위 주관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 시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한국의 경우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사자가 공동으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 임원겸임의 경우는 겸임임원의 소속회사, 회사신설 (JV)의 경우에는 신설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회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의 경우 지분 인수회사 및 상대회사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등 각국 경쟁당국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파견의 형식으로
출자회사의 미등기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임원겸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나요?**

● 공정거래법상의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겸임 여부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등기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사외 이사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파견 또는 휴직의 형식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이사의 직함은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의 겸임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에 J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한국, 유럽,
미국 등 해외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나요?**

● 기업결합신고도 역외적용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행위더라도 해외 국가의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하고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SK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경우 미신고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모두 개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해당 국가 영위여부,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신고국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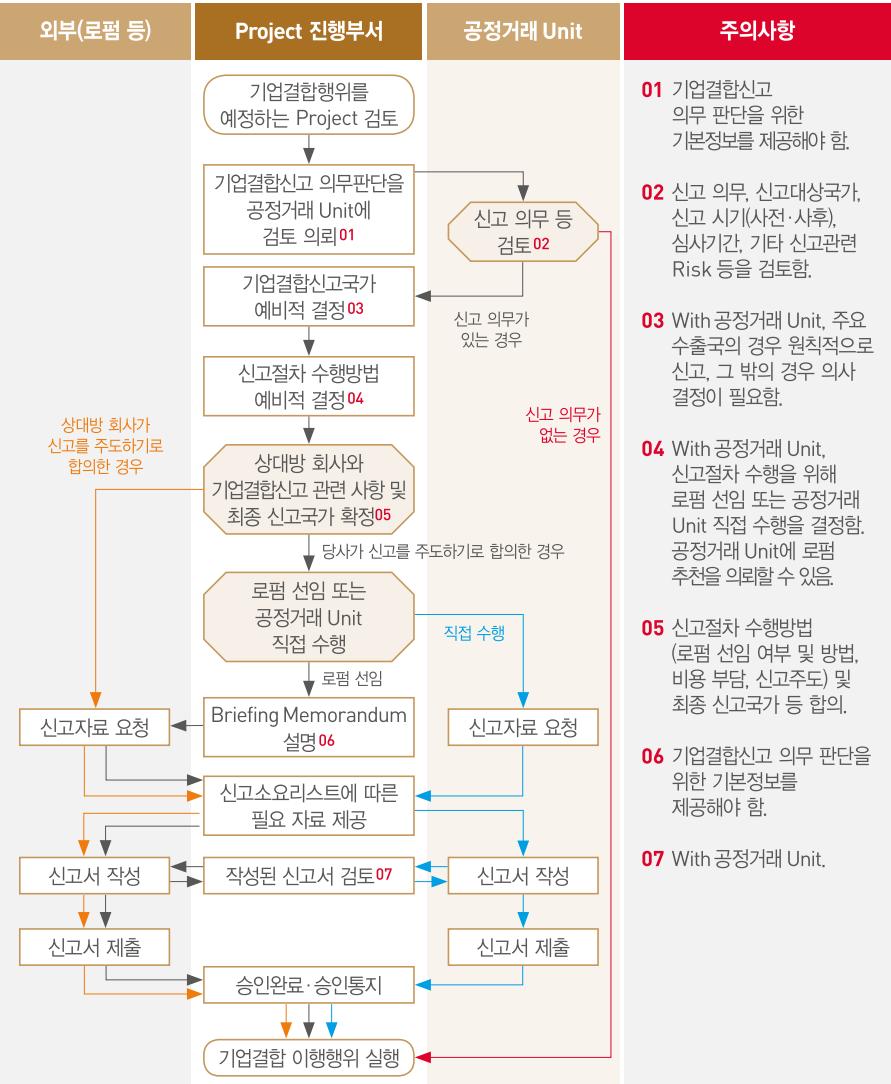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SPC)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나요?**

● PEF의 설립도 기업결합의 유형 중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에 해당하므로 최다출자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고, SPC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는 간이신고 대상이 됩니다.

● 단, PEF의 설립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GP) 중 최다 출자자(LP의 출자 부분은 제외)에게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업무 흐름도

기업결합신고는 일반적으로 본계약 체결일[회사설립은 주종(이사회) 의결일] 이후 기업결합증 결일 전에 신고해야 함(사전신고). 기업결합행위 종료 목표기한까지 시일이 축박하다면, 한국의 경우 본계약 체결 전 단계(MOU 등)에서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첨부 1

주의사항

01 기업결합신고 의무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함.

02 신고 의무, 신고대상국가, 신고 시기(사전·사후), 심사기간, 기타 신고관련 Risk 등을 검토함.

03 With 공정거래 Unit, 주요 수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그 밖의 경우 의사 결정이 필요함.

04 With 공정거래 Unit, 신고절차 수행을 위해 로펌 선임 또는 공정거래 Unit 직접 수행을 결정함. 공정거래 Unit에 로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05 신고절차 수행방법 (로펌 선임 여부 및 방법, 비용 부담, 신고주도) 및 최종 신고국가 등 합의.

06 기업결합신고 의무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함.

07 With 공정거래 Unit.

Briefing Memorandum

첨부2

하기 기본정보는 기업결합신고 의무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로 검토 의뢰 시 공정거래 Unit과 로펌에 제공해야 함.

기업결합신고 의무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 (Briefing Memorandum)

1. 신고인

- ▶ 주요 사업내용, 주요 주주현황, 전세계 및 국가별 매출액·자산총액·시장점유율
- ▶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내용 및 계열회사 현황
- ▶ 계열회사 중 합작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현황

2. 상대회사

- ▶ 상대회사 개요, 상대회사가 속한 그룹 전체의 사업내용 및 계열회사 현황, 전세계 및 국가별 매출액·자산총액, 거래금액, 상대회사의 국내 사업활동 내역
- ▶ 신고국가 소재의 계열회사 현황(설립일, 주요사업, 재무·주주현황 등)

3. 합작회사(JV) 개요 *

- ▶ 설립예정일, 주주현황, 재무현황, 사업계획서
- ▶ 임원구성, 주요 의사결정방법 등 지배관계 형성여부 및 그 사유

4. 합작사업 개요 *

- ▶ 합작회사 설립 배경 및 사유
- ▶ 합작파트너들이 합작회사가 영위할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 금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인하여 수평적, 수직적으로 영향을 받을 상품시장·지리적 시장 및 이러한 시장 확정의 사유
- ▶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성 증대효과

5. 관련시장 상황

- ▶ 관련시장의 규모(매출액·판매량) 및 특성,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
- ▶ 주요 경쟁자 현황(매출액·판매량·시장점유율 : 최근 2년간)
- ▶ 소비자의 구매전환이 용이한지 여부, 관련시장의 법적·제도적 장벽 여부
- ▶ 기타 시장상황 관련자료

* 3, 4번의 기본정보는 JV설립 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신고제도(요약)

첨부3

중국

- ▶ 관할기관 : 국가시장감독총국(반독점법)
- ▶ 당사회사들의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20이상의 당사회사 각각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 당사회사들의 중국 내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20이상의 당사회사 각각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 심사기간 : 일반신고의 경우 5~6개월, 간이신고의 경우 2~3개월 이상 소요

미국

- ▶ 관할기관 :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클레이턴법, HSR법(클레이턴법 제7조A))
- ▶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2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2백만 달러를 초과하며, 거래금액이 101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또는
- ▶ 거래금액이 403.9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신고기준액은 매년 2월경 경쟁당국에서 변경 공표함
(직전년도 기준금액 X GNP 성장률)
- ▶ 심사기간 : 신고일로부터 30일(추가조사 시 30일 연장가능)

EU

- ▶ 관할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합병규칙)
- ▶ 당사회사들의 세계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를 초과하고, 20이상의 당사회사 각각의 EU 역내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 당사회사들의 세계 매출액 합계가 25억 유로를 초과하고, 30이상의 EU 회원국에서 당사회사 각각의 매출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며, 상기 30이상의 EU 회원국 중 20이상의 당사회사 매출액이 각각 2천5백만 유로를 초과하고, 20이상 당사회사의 EU 전체 매출액이 각각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 심사기간 : 신고일로부터 25일(10일 추가소명 가능, 추가조사 시 최대 110일 연장가능)

일본

- ▶ 관할기관 : 공정취인위원회(사적독점금지법)
- ▶ 주식취득, 합병, 합병공동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공동주식 이전 시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 엔을 초과하고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50억 엔을 초과할 경우
- ▶ 영업양수 시 : 양수회사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 엔을 초과하고 양도회사의 일본 내 매출액이 3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 양수회사가 영업의 전부 승계 시 기준이며 부분 승계 시 규모 기준 다를 수 있음
- ▶ 심사기간 : 신고일로부터 30일(추가검토 시 90일 연장가능, 자료보정 기간 제외) 소요

공정거래 가이드북

03

계열회사와의 거래

SK계열회사와의 모든 거래
(SKI 계열간의 거래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케팅, 구매, IT조직 등
계열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계열회사와의 거래 가이드

Do's & Don'ts



- 계열회사와의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 가격·조건 비교가 어려운 거래가 있다면,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공정거래 Compliance 담당부서(이하 “공정거래 Unit”)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IT·광고·건설·물류 분야는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합니다.
-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하며 공정거래 Unit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합니다.
 - *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 :** 개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 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 **상품, 용역 :** 거래상대방과 분기당 총거래금액(매입+매출)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 **부동산 임대차 :** 개별 임대차의 연간 임대료환산금액(임대료+보증금환산)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세부 실천 사항

1/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1. 계열회사와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함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2. 계열회사와 거래 시에는 다음의 부당지원행위 유형별 주의사항을 숙지 후 진행해야 함(특히, 수의계약 시).

- [부당한 자금지원]** 자금은 상품, 용역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며,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됨
- [부당한 자산거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해서는 안 됨(임대차 포함)
- [부당한 인력 제공 거래]** 인력파견은 반드시 업무용역·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대가를 상당히 낮거나 높게 제공해서는 안 됨
- [부당한 상품·용역 거래]** 상품 및 용역을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합리적 고려 없이 거래해서는 안 됨
-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통행세)]** 직접 거래하는 경우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미미하거나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해서는 안 됨

3. 부당한 지원행위의 대상은 계열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유의.

–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동일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 밖 친족기업, 임직원 겸임·교류 또는 퇴직 후 인사교류 등이 있는 회사와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음

2/ 정상 거래조건 및 정상가격으로 거래

1.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과 가격을 제3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유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됨.
2. 가격·조건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거래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정상가격의 개념

- 제3자와 거래 시 적용하였을 가격, 시장 가격 등을 말하며, 시장가격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상황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상당히 높거나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 시 부당지원행위가 될 가능성이 큼

**3/ IT·광고·건설·물류 분야의 경우 수의계약 지양**

1. 합리적인 고려 없는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지양.
2. 특히, IT·광고·건설·물류 분야의 상품·용역 거래는 '12년 SK그룹의 내부거래 자율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함.'
3. 외부 주목도가 높은 거래이므로,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공정거래 Unit).

4/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금지

1. 특수관계인(여기서는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 및 그 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는 금지됨(공정거래법 제47조).
2. SK그룹의 경우 SK(주) 및 자회사(50% 지분 초과), SK디스커버리 및 자회사(50% 지분 초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함('21년말 기준이며, 공정거래 게시판 참조).
3. 다음과 같은 거래유형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및 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 [사업기회의 제공] 직접 수행했을 때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할 경우
-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4. 특히, SK(주)와 모든 거래 시(I/T O/S계약 포함)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함.
5. SK(주)와 거래 시에는 사전에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에 대한 공정거래 Unit의 검토를 받아, 보고 및 결재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문서를 첨부해야 함.

5/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Ch.8 참조)

1. 계열회사 포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공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진행해야 함.
2. 자금, 유가증권, 자산(담보제공, 부동산 임대차 거래 포함), 상품·용역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인 경우 유관부서에 검토 요청 필수.
3. 거래대상인 복수의 회사가 공시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각 회사별로 개별 공시해야 함.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요건

거래성격	거래상대방 ⁰¹	거래금액 ⁰²
자금, 유가증권, 자산	특수관계인 (ex. 국내계열회사, 동일인의 친족 등)	50억원 이상 or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 ⁰³
상품 또는 용역 (손익계산서상 매출에 계상)	동일인 측 20% 이상 출자회사 등 ⁰⁴ (ex. SK(주) 등 ⁰⁵)	분기별 합계액(매출, 매입 합산)이 50억원 이상 or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

⁰¹ 거래상대방에 해외계열회사는 제외(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비영리법인·단체는 포함

⁰² 금액 산정 시 부가세 불포함

⁰³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 기준이며 새로 설립된 회사일 경우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⁰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20% 이상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

⁰⁵ SK그룹의 경우 SK(주), SK디스커버리 및 그 상법상 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 해당함('21년말 기준)

그 밖의 주요 사항

1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위반 유형별로 상이함).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위반 시 제재

- 부당지원을 한 주체 회사와 지원을 받은 객체 회사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요함.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 질문들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거래 Risk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쟁입찰을 통해 계열회사와 거래한다면 Risk가 매우 낮아집니다. 입찰과정에서 타 사업자 대비 비교우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공정거래 Unit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와의 기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사유 및 거래조건 적정성에 대한 공정거래 Unit의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 및 용역 거래 시
가격산정이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상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만약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이 연산품, 계열회사간의 특수한 서비스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산정가격은 제3자와 해당 상품·용역을 거래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준의 가격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 거래 시 가격의 산정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기준가격(MOPS, ICIS 등)에 연동된 가격 산출식(Formula)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거자료 일체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특히,
영업권 등 자산거래 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까?

-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거래해야 하며, 제3자와의 거래가 시행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역시 해당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경우 공정위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산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정상임대료 = (부동산의 정상가격의 50%) X 임대일수 X 정기예금 이자율/365

계열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할 경우 무조건 통행세 Issue가 있나요?

부당지원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한가요?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계열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된 수수료 또는 용역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판단은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시장의 특성, 거래규모와 이익의 규모, 기간과 횟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지원목적과 의도가 명확하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공정위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전체, 혹은 계열회사 전체의 관련 거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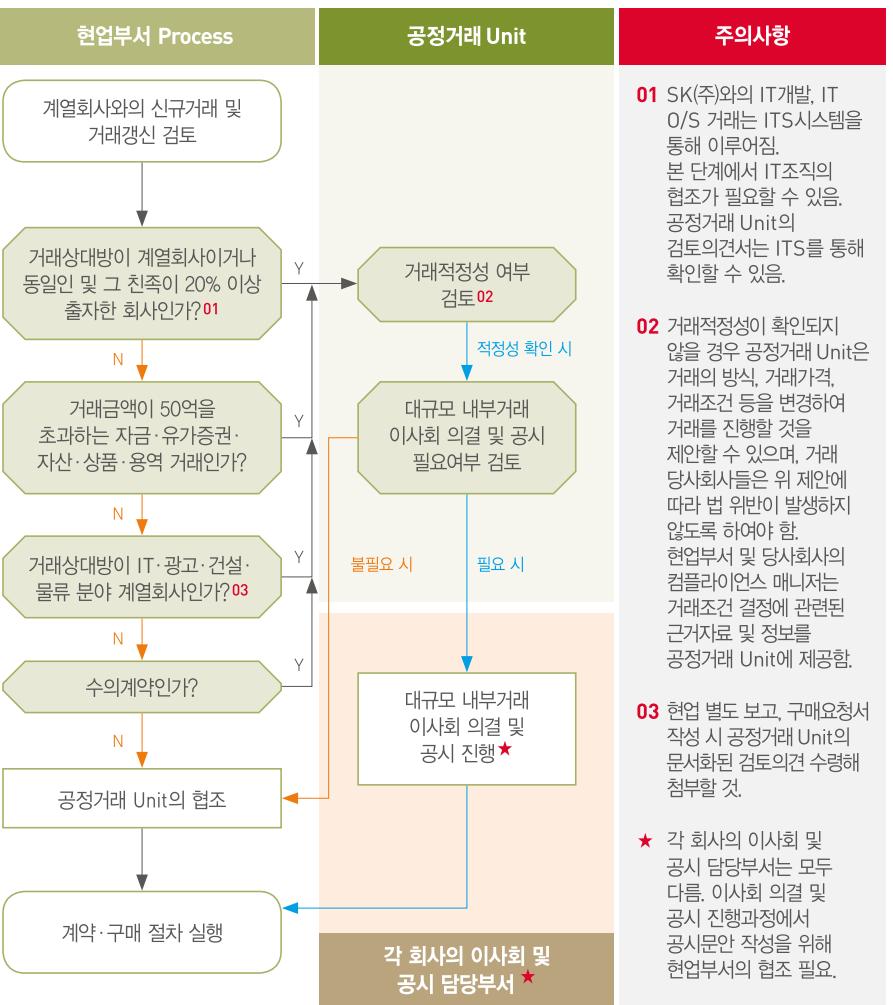
공정거래법에서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지원 주체와 지원객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법인이 지원주체이고 해외계열회사가 지원객체가 되어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국내 시장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의 거래 업무 흐름도

첨부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계약이나 구매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모두 정식 품의/결재시스템을 거쳐야 하며(E-mail 금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 Unit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됨. 검토 단계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공정거래 가이드북

04

제품 판매 · 대리점 거래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대리점 포함)에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케팅



제품 판매·대리점 거래 가이드

Do's & Don'ts

공통사항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제품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공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전속거래를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계약 체결 전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대리점들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회사가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 프로모션·광고 및 회사 홍보 과정에서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대리점 거래

- 대리점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리점법 상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내용과 주문내역이 다른 경우 주문내역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Process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 판매·대리점 거래 |

세부 실천 사항(공통사항)

1. 점유율이 높은 제품 판매 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제품별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함.
2. 다음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주의를 요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 ▶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3. 다음의 행위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으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예시

가격남용행위

-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행위
- ▶ 원자재 가격의 대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소폭 인하하는 행위

출고조절행위

- ▶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상황에서 공급부족임에도 공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 우리 회사 이외에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 ▶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특정 거래처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 거래처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신규진입 방해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 경쟁사가 대체거래선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2/ 거래처와 거래 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 다음의 행위 예시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예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대리점 거래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예시 p.49 참조)
- 거래거절 또는 거래중단** (주의사항은 p.85 6번 항목 참조)
 - ▶ 우리 회사 외에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요청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 우리 회사 제품을 전속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처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의 제품도 구매 하는 거래처와는 재고부족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가격·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
 - ▶ 신용도, 대량구매, 장기거래관계, 운송비용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거래처에게만 부당조건 등을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책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 ▶ (부당영역) 대규모 투자의 필요, 사업인허가, 거래비용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사 퇴출을 목적으로 원가 미만으로 계속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 유인**
 - ▶ 영업사원들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유인하는 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
 - ▶ (베타조건부 거래) 경쟁사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판매대리점과 전속거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판매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밖에서의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 (거래처 이전 방해)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처에 대해 담보해제를 해 주지 않는 행위
 -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행위

3/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 내용 기재 금지

1. 제품 판매를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계약서 내용 중 약관 내용의 판단

- 약관은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함
- 계약서 중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이 아님
ex)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 자연이자는 ()로 한다
- 계약서 중 당사자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정해져 있는 조항은 약관임
ex)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조항

2.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효력이 없는 불공정 약관의 예시

-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거래처가 회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거래처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가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당사자간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회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장지배력 없는 사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소수인 판매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의 판매가격 지정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5/ 프로모션 및 제품 광고 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1.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프로모션·광고를 하거나 회사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2. 내용에 경쟁사 및 업계 일반과의 비교, 프로모션 진행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특히 주의할 것.

적용대상 예시

- 상품의 용기와 포장, 상품권에 쓰인 문자와 도형, 판매점에 붙은 포스터와 안내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TV 및 영화관 상영 광고의 내용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
- [기만]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
- [부당 비교] 대상·기준 명시가 없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 [비방] 근거 없는 내용 또는 타사에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

세부 실천 사항(대리점 거래)**1/ 대리점법 적용기준**

1. 대리점법에 명시된 대리점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적용됨.
2.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 의무의 경우 대리점법 시행일 ('16. 12. 23.)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됨.

2/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대리점 판단기준

1.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임.

대리점이 아닌 경우

-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송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아니므로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 후 가공, 제조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End-user이므로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음

2.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외국기업인 경우는 대리점 거래에서 제외됨.

중소기업 판단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 도매 및 소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평균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름)
- 단, 대기업 계열회사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한 업체 및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기업의 소속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3/ 대리점 거래 시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

1. 대리점 거래의 경우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가 부과됨(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서 상 자동 갱신 조항과 상관없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교부 및 보관하여야 함).
2. 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3.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함(가령 판매장려금 제도가 없는 형태의 대리점 거래라면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해야 함).

필수적 기재사항

-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일시에 관한 사항 ③ 대금 지급수단, 지급시기
④ 반품조건 ⑤ 영업양도 ⑥ 계약해지 사유, 절차 ⑦ 판매장려금 지급 ⑧ 기타(위탁판매내용)

4. 기본 공급계약서 및 주문내역·정산내역 합의자료를 대리점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5. 계약서 작성률 거부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률 요청하고, 요청 사실에 대한 입증기록을 보관해야 함(계속 거부 시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보관).

4/ 대리점 거래 시 주문내역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Process 이행

1. 계약내용과 주문내역이 다른 경우 주문내역에 대한 합의를 증명해야 함.
2. 대리점이 주문Web 또는 ERP를 통해 직접 주문 시 별도 증명자료 구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문Web 또는 ERP 사용을 권고.

주문Web 또는 ER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Process

- 전자문서, Fax 등으로 제품 주문서 양식(p.58 참조)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제공된 제품 주문서를 통해 주문을 수령함
- 유선주문을 고수하는 거래처의 경우 유선으로 접수한 주문내역을 제품 주문 확인서 (p.59 참조)에 기재하여 전자문서, Fax 등으로 거래처에 송부하고 거래처로부터 제품 주문 확인서를 접수

- 주문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 전후의 제품 주문서 또는 주문 확인서를 모두 구비해야 함

3. 추가정산, 경쟁력 부여 등의 사유로 주문 당시 거래가격과 정산 시 가격이 상이한 경우 정산 시점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함.

5/ 대리점 거래 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점법에서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가중처벌하므로 특히 주의할 것.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유형별 예시

- 대리점의 주문내역에 대한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 구입강제
 - ▶ 연말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이 지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미리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거부하고 이를 정산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 합의 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 ▶ 뇌물, 접대 등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 ▶ 대리점에게 판매량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도해지, 공급중단, 판매수수료 미지급 등의 제재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대리점에게 임대한 장비 등이 대리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된 경우 당초 구입 가격에 근거해 변상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 회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판매장려금을 삽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대리점과 합의한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행위

경영간섭

- ▶ 대리점이 자신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하는 등의 인사 결정을 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 ▶ 경영 지원 등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6/ 대리점 거래 시 보복조치 금지

1.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됨.

그 밖의 주요 사항

1/ 법 위반 시 제재

법률	규제 내용	위반 시 제재
공정 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가격 인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6% 범위 내(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재판매가격 유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4% 범위 내(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내)
	불공정거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4% 범위 내(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당 지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고객 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대리점법	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작성 의무(5,000만원), 보관 의무(1,000만원)
	거래상 지위남용 및 보복조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 과징금 : 위반금액 범위 내(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매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의 경우 3배 손해배상 책임
약관 규제법	불공정 약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 벌칙 : 시정조치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 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2% 범위 내(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질문들은
제품 판매·대리점 거래 시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판매대리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거래중단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가격의 차별적 취급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판매지역 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계약만료 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독점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의 거래인 경우로서 판매대리점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제품가격의 책정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원가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부당염매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대리점들에게 판매·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영업지역으로 설정할 뿐 위반에 대해 구속성을 두지 않는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 복수 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지역제한제는 허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희망소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위법한가요?

거래처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대리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도 적용 받지 않나요?

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B사업자는
A사업자의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희망소매가격의 표시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게 희망소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6. 4월 중국에서 한국타이어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수직적 담합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외영업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p.44 참조)

같은 이유로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는 대리점 거래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상품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입니다. 한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는 당초에 공급받은 상품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사업자의 상품과 B사업자의 상품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B사업자의 판매행위는 A사업자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사업자가 A사업자의 대리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에게 전속구매의무가 없어서 여러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어 대리점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급업자가 설치한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 관리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계약서 기재사항 중, 실제 거래와 무관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예시가 대리점법에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회사의 규모를 근거로 대기업인 우리 회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대기업인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 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간 관리자는 공급업자가 설치한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수행하는 자로서, ① 공급업자가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위탁 받고, ② 상품 판매 대가로 위탁 수수료를 수취하며, ③ 자신이 판매 사원을 고용·지시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리점에 해당합니다.

- 중간 관리자도 거래형태가 대리점 거래(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 이상 대리점법 적용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판매장려금 제도가 없는 형태의 대리점 거래라면,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공급업자가 의도적으로 수수료율 등 일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지연 시킨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거래를 개시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교부하되 그 사유와 대략적인 기준, 계약조건 확정 시점 등을 기재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신속히 수정된 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납품장소 및 일사는 대리점의 매주문 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하기가 곤란한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는 ‘납품장소 및 일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고 기재하고, 납품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 별도의 납품 확인서 등을 대리점에게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서면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갱신 시마다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기존 계약은 소멸), 대리점법은 ‘거래기간’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 갱신 시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사후 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전 작성되었던 계약서의 경우(법 시행일 현재 유효),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갱신해야 하나요?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나요?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Incentive형식으로 지급된다면 판매목표강제로 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될 수 있나요?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를 즉시 갱신할 필요는 없고, 2016년 12월 23일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판매목표를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판매목표달성을 못하는 경우 공급 감소, 계약해지 등의 Penalty를 부여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따라 장려금(Incentive)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목표강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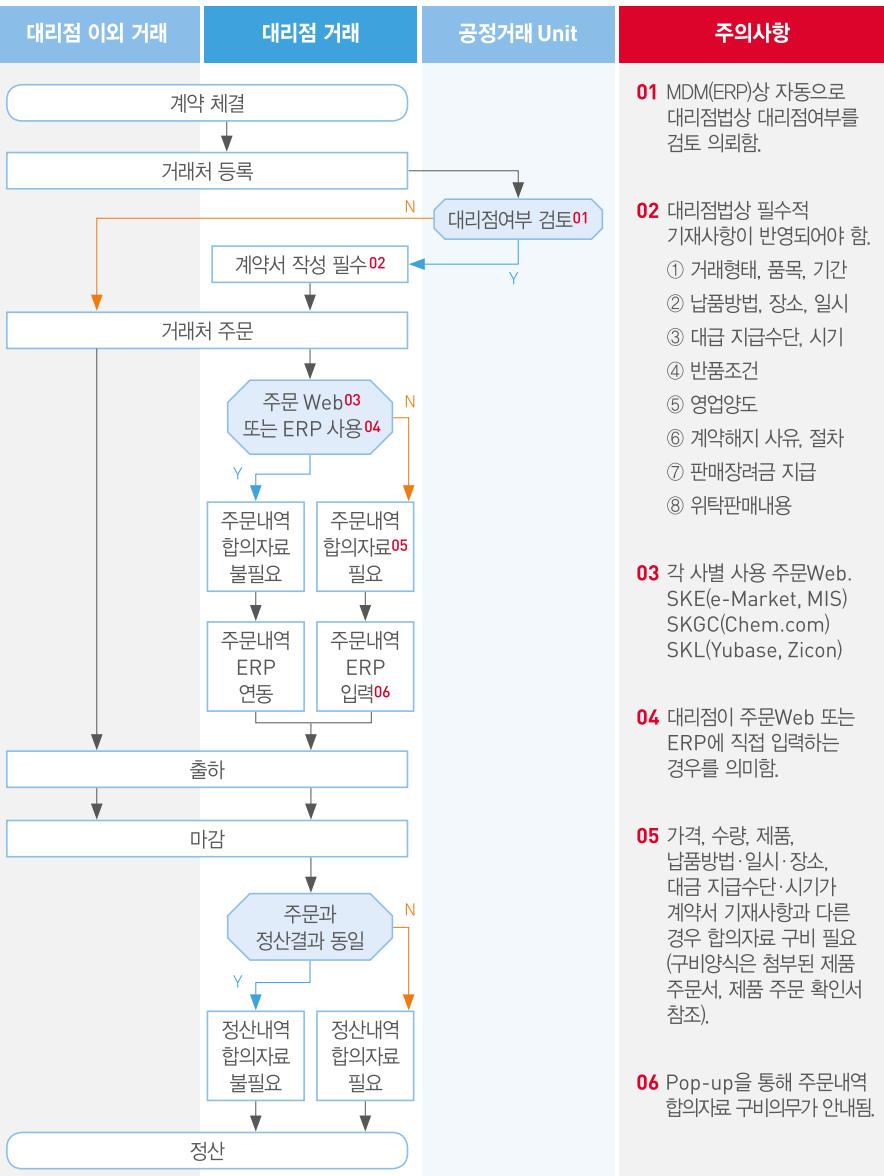
그러나 거래처가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마진이 없는 시장상황인 경우, 목표달성을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되어 판매목표강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목표 신장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대리점의 주요한 수익원이어서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대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대리점 거래 업무 흐름도

첨부1



대리점 거래 시 제품 주문서

주문Web 또는 ER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자문서, Fax 등으로 아래 제품 주문서를 대리점에 제공하고, 제공된 제품 주문서를 통해 대리점의 주문을 수령해야 함.

대리점 거래 시 제품 주문 확인서

유선주문을 고수하는 대리점에게는 유선으로 접수한 주문내역을 제품 주문 확인서에 기재하여 전자문서, Fax 등으로 송부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 주문 확인서를 회신 받아야 함.

<u>제품 주문 확인서</u>						
<p>(이하 “구매자”)와 SK----- 주식회사 (이하 “판매자”)가 체결한 계약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역을 확인드리오니, 구매자는 아래 주문 내역 확인 후 이견이 없으시면 「4. 구매자 내용 동의」란에 “0” 또는 “✓” 표시 후 회신해 주시고, Fax의 경우, 맨 하단 기재 필요사항도 반드시 기입 후 회신해 주시기 바 랍니다.</p>						
** 애니메이션 **						
<p>1. 거래 형태 및 품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제품</td> <td style="width: 33%;">수량</td> <td style="width: 33%;">가격</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제품	수량	가격			
제품	수량	가격				
<p>2. 납품방법, 납품장소, 납품일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납품방법*</td> <td style="width: 33%;">납품장소</td> <td style="width: 33%;">납품일시</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운송 수단 및 운송비 부담자를 기재</p>	납품방법*	납품장소	납품일시			
납품방법*	납품장소	납품일시				
<p>3. 제품대금의 지급수단, 지급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대금지급수단*</td> <td style="width: 50%;">대금지급시기**</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현금, 어음, online 입금” 등으로 기재 **) 제품주문서에 대금 지급, 월마감()일 후 지급” 등으로 기재</p>	대금지급수단*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수단*	대금지급시기**					
<p>4. 구매자 내용 동의 ()</p> <p>(Fax 회신시 기재 필요사항) 내리침명 : 담당자명 :</p>						

공정거래 가이드북

05

하도급거래 (수탁거래 포함)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제조(임가공 포함) 및 영업활동으로서 타사(계열회사 포함)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규격·품질을 지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매, 하도급거래(수령·검수 포함)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하도급거래 가이드

Do's & Don'ts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거래조건 변경 포함),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수탁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 하도급대금은 납품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과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하도급법이 열거하는 원사업자의 9개 의무 사항, 13개의 금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세부 실천 사항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란

1. 제조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우리 회사가 영위하는 업에 따른 물품 제조 또는 용역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소규모 중견기업 포함)에게 위탁하는 거래가 하도급거래임.
2.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우리 회사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도 해당.
3. 기술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샘플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용역위탁의 범위

- 우리 회사가 타사(계열회사 포함)에 제공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ex) SK이디에스가 수행하고 있는 Shared Service로서의 측정/분석/실험업무에 대한 위탁
- 단, 우리 회사가 단순히 제공을 받는 용역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 Unit의 검토 필요

2/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교부 및 보존

1. 아래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제공 및 대가의 지급내용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양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

3. 공정위가 배포하는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4. 계약서, 수령증명서, 입찰명세서 등 하도급 관련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비밀유지계약서의 경우 7년).

3/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금지

1. 하도급대금은 공정·타당한 절차로 결정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됨.

2. 발주량 등 단가결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3. 경쟁입찰의 경우 표준입찰공고서를 활용할 것.

4. 경쟁입찰에서 재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됨.

5. 하도급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p.72 참조) 금지.

4/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금지

1.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탁의 취소, 변경, 수령 거부, 반품이 가능함.

2. 목적물의 납품 즉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5/ 하도급대금 감액

1.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 시 반드시 하도급대금 감액조건을 명시해야 함.

2.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감액사항에 대한 서면(감액사유, 기준, 방법, 대상물량, 감액금액 등 기재)을 교부해야 함.

3. 감액에 대한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감액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됨.

4. 하도급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간주하는 행위(p.73 참조) 금지.

6/ 하도급대금 지급

1. 목적물수령일(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지연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2.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가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공탁 등의 방법을 활용.

3.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됨.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1. 공급원가의 변동을 사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됨.

2. 이 때,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해 제시해서는 안 됨.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 금지

- 기술자료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음.
- 기술자료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사용기간, 반환, 폐기 방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대가의 지급방법, 권리 귀속 관계 등이 기재되어야 함. 따라서 기술자료 요청 시, 기술자료협력시스템(SKI계열 통합, 2019년 구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사전 서면 교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술자료 요청을 통해 수령한 기술자료는 최초 요청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 유출 행위도 기술 유용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
- 기술자료의 범위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이 포함됨. 기술자료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Unit으로 문의.
※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21. 8. 17. 개정)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 →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자료
-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유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기술자료 요청 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해당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함.

그 밖의 주요 사항

1/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2/ 수출품목 위탁 시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수출할 물품의 제조위탁 시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야 함.
-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렵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함.

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p.84 4번 항목 참조)

-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됨.
- 목적물의 품질유지 또는 납기 내 납품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와 거래하도록 하면 안 됨.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기자료 등 주요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됨.

요구가 제한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ID·PW 등 접속 정보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지정하여 이를 매입, 사용, 이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5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1.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
2. 대량납품 등의 사유로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발생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검사 기준에 불합격했다고 반품을 해서는 안 됨.

6 부당한 특약금지

1. 아래의 예시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들로 이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됨.

부당특약의 예시

-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 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해야 한다는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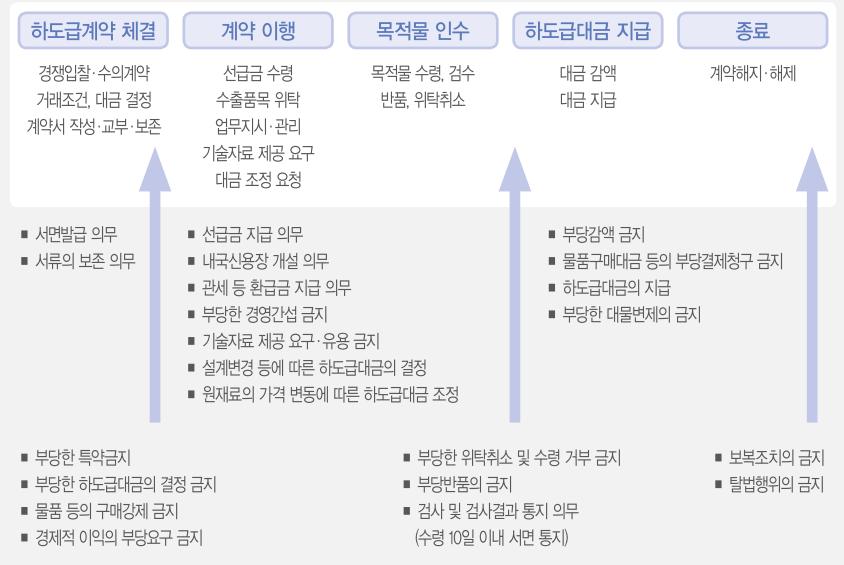
7 거래종료 절차 (p.85 6번 항목 참조)

1. 계약해지·해제의 기준,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2. 거래종료 시 충분한 유예기간(통상 3개월의 여유)을 두고 사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8 그 밖의 하도급법상의 금지 및 의무 사항

1. 상기 실천 사항을 포함한 원사업자의 9개 의무 사항, 13개의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일방적 하도급대금의 변경 금지,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등.

9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 사항



10/ 법 위반 시 제재

1. **적용대상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경우 7년 이내).
2.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내), 과태료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지 영업정지.
3. **사법적 제재** : 검찰 고발 시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보복조치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 경영간섭, 탈법행위 및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및 법인 처벌 가능(양벌규정).
4. 손해배상 책임,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의 경우 3배 손해배상 책임 있음. 공정위 고발 시 공공입찰 제한 가능(원 스트라이크 아웃).
- ※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신설, '21. 8. 17. 개정
5.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운영 중임.



다음 질문들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주
문하고 나중에
주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도 되나요?

하도급거래에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 받은 물품제작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주문하고 주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제작을 시작한 후에야 주문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이는 서면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구두로 주문하는 것은 향후 세부 계약내용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큰 행위이므로 회사의 정당한 구매 절차를 지켜 구매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서면미발급 또는 불완전 서면발급, 부당특약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SKGC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이행 평가 대상 회사이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가점 요인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판촉물
제작을 위해 SK 마크가
부착된 달력을 주문하는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판촉물의 제작 또는 단순 소모품의 제작은 우리 회사가 업으로 영위하는 제품에 관한 제작 위탁이 아니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의 설정에 있어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공급원가 상승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나요?

- 공급원가의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의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에 대한 협의는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양 사업자 간의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나요?

- 단가 인하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소급 적용하였다라는 주장은 그 합의의 진정성과 자발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감액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그 기준일을 합의일 이전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시
하도급법은 어떠한 행위들을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나요?**

- 하도급법은 다음의 행위들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고 심사지침에서 그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다음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척오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회사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우리 회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하도급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들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간주되나요?

● 하도급법은 다음의 행위들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간주하고 있고 심사지침에서 그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대금의 감액을 지양하고,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시에도 다음의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에 대한 순회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관련 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별도의 발주자 없이 당사가 직접 협력업체에 제조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하도급 관계’ 외에 ‘원도급 관계’도 제조위탁 등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 Unit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단순 포장재, 포장용기
주문, 임가공 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p.63 참조)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포장재 제조위탁, 임가공 위탁 역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정 거래 Unit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어떤 자료를 기술자료로
보고 있나요?**

-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가 아닌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당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하거나 함께 작성하는 문서 내지 자료 중에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술자료의 소유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법규 준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문서 내지 자료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Unit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의 정보·자료 중 수급사업자의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자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①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②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나 자료
 - ③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정보나 자료(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 ④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
 - ⑤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 |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

- ⑥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로 당사와
하도급거래를 체결하지
않은 협력업체가 입찰
제안서에 포함한 자료
또는 당사와의 거래
개시를 위해 제시하였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사용·제공행위에
해당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와 실제로 하도급거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하도급거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나 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이 적용되므로 이하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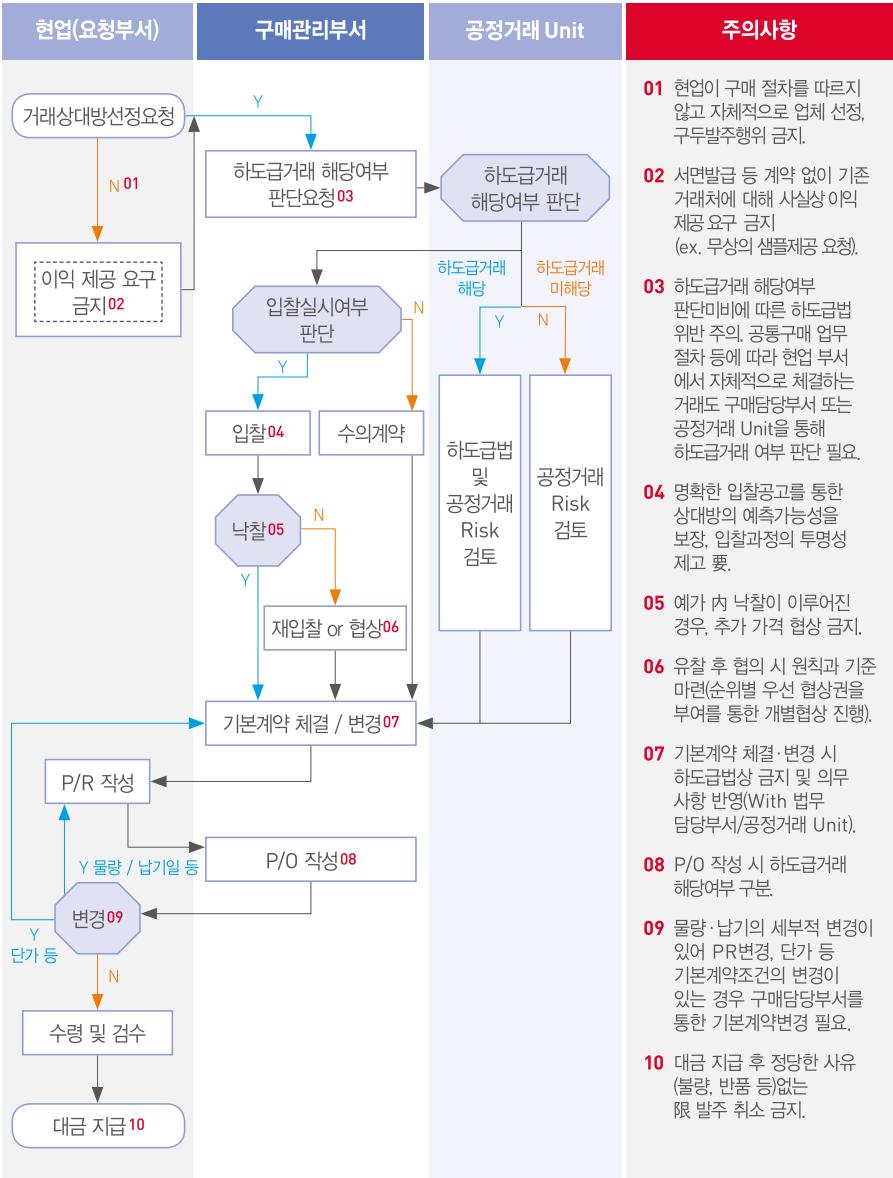
-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거래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나요?**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 당사와 수급사업자 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 형식에 대하여는 공정 거래 Unit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업무 흐름도

첨부1



수위탁거래

첨부2

1 수탁·위탁거래(이하 “수위탁거래”)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여, 해당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임.
-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수위탁거래에 해당되며, 제조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전 책임을지고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봄.
- 수리, 가공, 공사, 용역(기술개발 포함)은 거의 대부분이 수위탁거래임.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성품의 단순 구매
-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
- 대리점 등을 통해 규격 등이 정해진 일반 제품을 구입한 경우
- 1회성 단순 택배처럼, 계약 등에 의한 운송이 아닌 경우
-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

2 세부 실천 사항

- 중소기업(소규모 중견기업 포함)과의 위탁거래 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 해당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생협력법 상 의무/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상생협력법의 의무/금지 사항*은 하도급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하도급거래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 * 약정서의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물품수령 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금지, 납품 대금의 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 등

수위탁거래(상생협력법)와 하도급거래(하도급법) 비교

첨부3

구분	수위탁거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수위탁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됨. * 3년 평균 연간매출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하도급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연간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간 거래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조항(제13조)이 적용됨.
거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가지 수위탁거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탁기업 업(業)의 유형 (6가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탁기업 업(業)의 유형 (5가지)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포함) <p>*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니어도 해당되며, 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포함)은 거의 대부분이 수위탁거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가지 하도급거래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업(業) 유형 제조-제조, 판매-제조, 수리-제조, 수리-수리, 건설-제조, 건설-건설, 용역-용역 <p>* 업에 따른 위탁이어야 함.</p>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서의 발급(제21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제25조 제2항),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제21조의2) ▶ 납품대금의 지급 등(제22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제22조의2) ▶ 검사의 합리화(제23조) <p>[제25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발주물량 감소 및 중단(제7호)/부당한 물품수령 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제1호) ▶ 납품대금 지연지급(제2호),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자연이자 지급(제25조 제3항)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제3호) ▶ 추가 납품대금 미지급(제4호) ▶ 부당한 물품 등의 강매(제5호) ▶ 할인 불가능한 어음 지급(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의 발급(제3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6조의2) ▶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8조)/감액 금지(제11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제4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16조) ▶ 구매강제(제5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변제 요구(제8호) ▶ 부당한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제9호) ▶ 부당한 발주 기피(제10호) ▶ 부당한 검사 기준(제11호)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제12호) ▶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제13호) ▶ 보복조치 등의 금지(제14호) <p>※ 하도급법과 다른 사항 기술자료 임차제도(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차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제25조 제1항 제1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대물변제(제17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제7조) <p>▶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제9조)</p> <p>▶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2조의3)</p> <p>▶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제18조 제2항 제3호)</p> <p>▶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p>
		<p>※ 상생협력법과 다른 사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제3조의4), 선금금의 지급(제6조),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14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5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8조)*,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p> <p>*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 제외</p>
제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요구(별점 2점 이상 부과) 시정권고(별점 1.5점 이상 부과), 시정명령(별점 2점 이상 부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이행 시 공표(별점 3.1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명령 병과 가능(1회 별점 2점 이상 또는 3년 누산별점 4점 이상 시)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거부·조사거부·기피 등(5천만원 이하) - 약정서 미발급,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천만원 이하) - 교육명령거부, 서류미비치 등(백만원 이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3년 누산별점 5점 초과) <p>※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상 금지행위 해당사항은 공정위에 시정조치 요구 의무(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고(별점 0.25점/0.5점 부과), 시정권고(별점 1점 부과), 시정명령(별점 2점 부과) <p>▶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3년간 누산점수 4점 이상)</p> <p>▶ 별점부과 및 교육명령</p> <p>▶ 과징금(하도급대금 2배 이내, 별점 2.5점)</p> <p>▶ 과태료</p> <p>▶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3년간 누산별점 5점 초과)</p> <p>▶ 사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공표된 기업이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공정위 전속고발 </p>

공정거래 가이드북

06

협력회사와의 거래

우리 회사가 물품(판촉물, 사무용품, 기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건설·설비·연구등과 관련하여 공사·설계·수리·기타 용역(CLX 정기보수 등)을 위탁하는 모든 협력회사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매, 생산, 연구개발, 협력회사 관리조직 등 협력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협력회사와의 거래 가이드

Do's & Don'ts



- 우리 회사는 통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회사에게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와의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거나, 금전·물품 등을 비롯한 어떠한 경제상 이익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협력회사와 2차 협력회사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등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에게 우리 회사나 계열회사 등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가격, 물량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특정한 사업자에게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와의 거래 |

세부 실천 사항

1/ 우리 회사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

1.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함.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발주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발주자에 대한 수입의존도,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사업규모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매출 및 자산규모의 차이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함

2. 협력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우리 회사에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일반적인 입장임.
3.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협력회사의 동의가 있고 계약서상 날인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2/ 불이익 제공 금지

1. 협력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변경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2. 다음의 행위 예시들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거래대금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행위(단가 후려치기)
 - ▶ 경쟁입찰 시 우리 회사의 예가 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예산상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협상을 실시해 낙찰금액을 낮게 조정하는 경우
- 우리 회사의 과실이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협력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 작업지시 후 완료한 작업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대금 미지급 포함)
- 구두 또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작업을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1.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협력회사에게 전기하거나, 금전·물품·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받아서도 안 됨.
2. 다음의 행위 예시들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거래와 무관하게 우리 회사의 행사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
- 거래 계속 등의 편의를 봐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뇌물, 접대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구입하는 물량 외에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상 규정된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대가 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경영간섭 금지

1. 협력회사의 다음의 행위 예시들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경영간섭 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협력회사가 자신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등의 인사 결정을 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퇴직자 재취업을 종용하는 행위 포함)
- 경영 지원 등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종업원에게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않고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2. 경영지도 명목 하에 협력회사와 2차 협력회사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도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1차 및 2차 협력회사 관련 주의사항

- 협력회사와 2차 협력회사간 계약 개입 금지
 - ▶ 대금의 결정 및 원자재업체의 지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경영간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 불가피하게 간섭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범위를 명기해야 함
- 2차 협력회사에 대한 품질 및 경영지도
 - ▶ 2차 협력회사의 불량 등의 문제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 2차 협력회사의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품질관리 및 경영지도의 범위 등에 관해 우리 회사와 1·2차 협력회사간의 3자간 합의서를 체결할 것

5/ 거래강제 금지

1. 협력회사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우리 회사나 계열회사 등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2. 다음의 행위 예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협력회사에게 계열회사 또는 우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6/ 거래개시 거절 또는 거래중단 금지

1. **〈거래개시 거절〉** 우리 회사와 거래개시를 원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함.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개시를 거절해야 함
 - 이 때, 개시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기준 판단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야 함
2. **〈거래중단〉** 협력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판매전략 변경, 사업철수 등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됨.
 -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협력회사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함
(예) 협력회사가 보유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고 인수

정당한 사유로 거래중단 시 주의사항

- 채무불이행(납기지연, 품질불량 등), 협력회사의 부도 등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함
 - ▶ 거래중단의 사유에 대한 판단 자료를 보존할 것
 - ▶ 거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거래중단과 그 사유를 알리는 문서를 발송할 것
 - ▶ 협력회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거래중단에 따른 협력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것

7 가격·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 금지

1. 신용도, 대량구매, 장기거래관계, 운송비용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에게만 거래대금 또는 지불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됨.
2. 동일 직무에 대해서 특정 협력회사에게만 현저한 물량을 몰아주어서는 안 됨.
3. 특히, 유리하게 취급하는 협력회사가 계열회사이거나 퇴직 임직원의 회사인 경우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더욱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그 밖의 주요 사항

1 사업활동 방해

1.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의 행위로 부도발생이 우려되거나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가 발생하는 등 협력회사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됨.
2. 특히, 건설·설비·연구 등과 관련한 공사·설계·수리·기타 용역을 거래하는 협력회사의 관계에서 다음의 행위 예시들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기술의 부당이용)**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에게 무상으로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방해)**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협력회사에 대해 담보해제를 해 주지 않는 행위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협력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협력회사의 핵심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행위

2 법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2. **과징금** : 관련 매출액 4%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한도).
3.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당지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다음 질문들은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특정 협력회사와의
독점적·장기적 거래로 오히려
우리 회사가 다른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우리 회사에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나요?**

**협력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항으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전통보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함을 규정할 경우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계속해서 거래해 오던
협력회사들을 심사하여
우리 회사의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거래를 중단해도
되나요?**

- 이론적으로는 특정 협력회사에게 협상력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거래상 지위가 부정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바, 대기업인 우리 회사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사전통보 없는 계약 해지 규정은 협력회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우리 회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협력회사의 생산·기술력 미달 등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사전에 이를 공개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거래기간 중의 해지는 지양해야 하고, 간신거절의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등 계약상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가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금지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Ch.5 참조)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 받기 쉽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북

07

자회사 설립 · 지분 취득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중간지주회사인 SKI와 SKI계열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지분 취득 등의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략기획, 마케팅



자회사 설립·지분 취득 가이드

Do's & Don'ts

-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으므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 지주회사(SK(주), SKI)는 자회사가 아닌 SK계열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의 주식은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소유해야만 합니다.
-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SK계열이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E, SKGC, SKL, SKIPC, SKTI, SKIET, SKO, SKEO 등)는 SK계열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100% 전량 소유하는 경우(증손회사)에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자회사는 SK계열이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자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 Compliance 담당부서(이하 “공정거래 Unit”)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자회사 설립·지분 취득 |

세부 실천 사항

1/ 지주회사의 정의 및 행위제한

1.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2. SK그룹에서는 SK(주)가 지주회사이며, SKI는 SK(주)의 자회사이면서 동시에 지주회사임.
– SKI는 이 경우 중간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중복 적용 받게 됨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
- 자회사 지분율 규제 :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 국내비계열회사의 주식 5% 초과보유금지**
- 국내금융회사 주식소유금지

* 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1. 12. 30.) 전의 지주회사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이 적용됨

** 단, 소유하고 있는 국내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

2/ 자회사의 정의 및 행위제한

1.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2. SKI는 SK(주)의 자회사에 해당하고, SKE, SKGC, SKL, SKIPC, SKTI, SKIET, SKO, SKEO, 대한송유관공사, 행복키움은 SKI의 자회사에 해당함.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 국내금융회사 지배금지(금융회사 주식소유는 가능)

* 단, 종전자회사가 종전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이 적용됨

3/ 손자회사의 정의 및 행위제한

1.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2. SKE, SKGC, SKL, SKIPC, SKTI, SKIET, SKO, SKEO, 대한송유관공사, 행복키움은 SK(주)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 100% 지분 보유
- 예외 규정(외국인투자촉진법 : UAC, YMBC)
 - ▶ 손자회사가 50% 이상 + 외국기업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JV의 경우, 공정위 사전심의를 거쳐 산업부(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JV설립 가능
-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 금융회사 지배금지(금융회사 주식소유는 가능)

그 밖의 주요 사항**1/ 증손회사의 정의 및 행위제한**

1. **증손회사** : 손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2. 네트웍, 제주FC, UAC, YMBC, SKME, 원풀, 행복디딤, 행복모음, 행복믿음은 SK(주)의 증손회사에 해당함(KNC는 해외계열회사인 SSNC의 자회사로 자주회사 체제 외 회사임).
3. 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2/ 계열회사 편입 요건 검토

1.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대상 회사가 계열회사에 편입(또는 제외)되는지를 검토해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편입(또는 제외)신고를 해야 함.
2. 계열회사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서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회사를 의미함.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SK그룹)
3. 아래 지분율 요건이나 지배력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지배관계가 성립하여 계열회사에 편입 됨.

지분율 요건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 *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동일인·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
 - * 상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 동일인이 당해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또는 인사교류(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복직 등)

-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피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공시 요건 검토 (Ch.2, Ch.8 참조)

1.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위 주관 공시 의무가 있는지 사전검토 필요.
2. 신고 의무 및 공시 의무 존재 시 적시 이행 필요.

4/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1. SK기업집단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고 아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음.

상호출자제한

-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소속 계열회사 간에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출자고리 형성 및 기존 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 포함)도 금지됨

채무보증제한

-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금지됨

5/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2. **과징금** : 관련 위반 금액의 20% 범위 내.
3. **벌칙**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벌금.
※ 계열회사 편입·제외 미신고, 지연신고 시 1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 질문들은
자회사 설립·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비계열회사 지분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나요?

자회사·손자회사는 각각 손자회사·증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계열회사 편입 요건에 미달하는 수준의 타회사 주식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편입기준인 지분율 요건은 30% 이상 최다출자자이지만, 30% 미만으로 소유하더라도 지배력 요건에 해당하면 계열회사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열회사 지분 소유에서 정량화된 지분 소유 가능비율은 없습니다. 타회사의 주식취득 시에는 계열회사 편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 Unit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지주회사 체계 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법령상 정의에 국내회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외계열회사를 설립하여 다시 국내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등의 우회 방법은 탈법행위로서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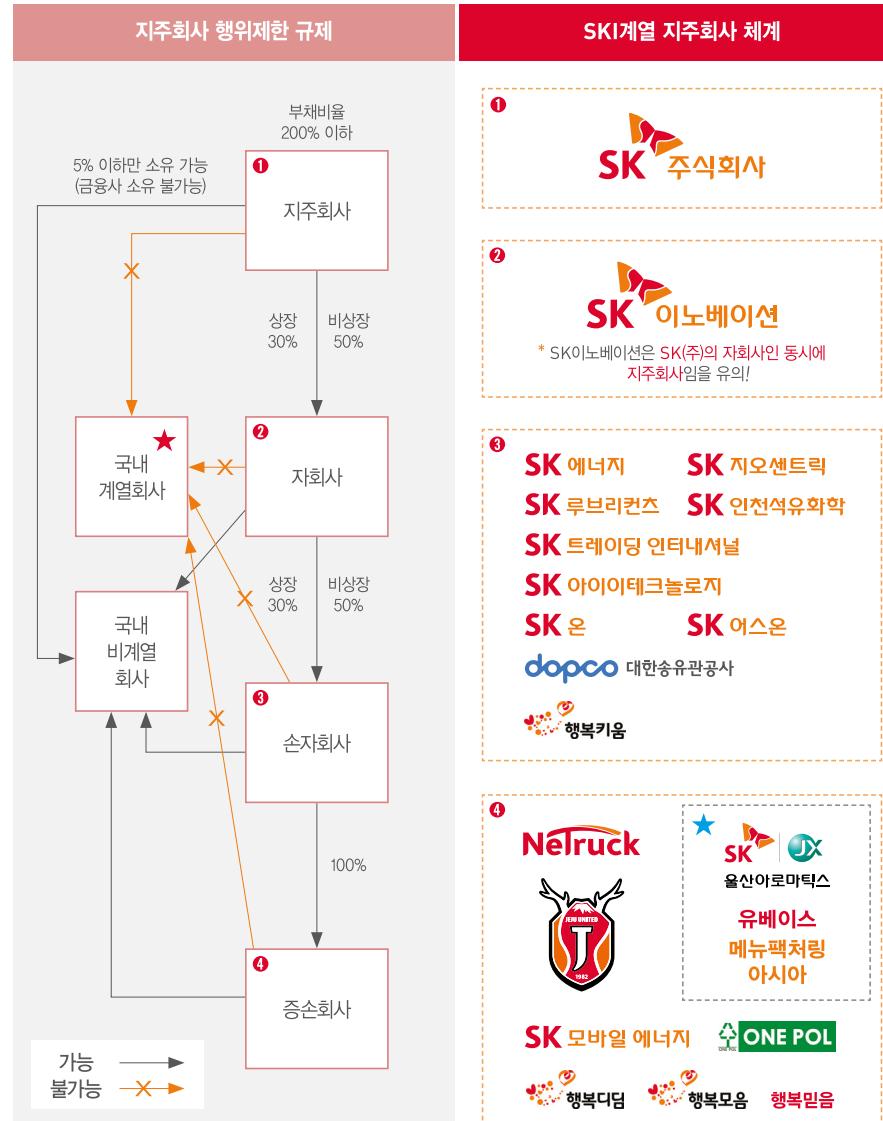
지주회사제도와 계열회사 편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제도와 계열회사 편입제도는 다른 제도이며 별도의 요건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KNC는 SK그룹의 계열회사이지만 국내 손자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해외계열회사인 SSNC의 자회사이므로 지주회사 체제 밖의 회사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 내의 회사는 계열회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해당하면 결과적으로 동시에 계열회사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도식화

첨부



공정거래 가이드북

08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무, 공시 담당조직, 자회사 관리조직 및
계열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조직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가이드 Do's & Don'ts



-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합니다.
 - *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 : 개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 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 **상품, 용역** : 거래상대방과 분기당 총거래금액(매입+매출)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 **부동산 임대차** : 개별 임대차의 연간 임대료환산금액(임대료+보증금환산)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M&A, JV설립, 영업양수도, 주식인수 등의 기업결합, 자회사 설립, 지분투자 등의 경영활동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등 필요절차를 수행하고 정확한 내용의 공시를 적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 이전에 공시된 내용과 유사한 공시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존의 공시 내용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

세부 실천 사항

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Ch.3 참조)

1.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경우(담보제공,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 포함)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일(비상장사는 7일) 이내 공시.
2. 동일인 측 지분 20% 이상인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와 분기별로 매출·매입 합산해 5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일(비상장사는 7일) 이내 공시.
 - SKI계열은 SK(주), SK디스커버리 및 그 상법상 자회사가 적용대상 거래상대방에 해당 ('21년말 기준이며, 공정거래 게시판 참조).
3. 거래대상인 복수의 회사가 공시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각 회사별로 개별 공시해야 함.

*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일 경우, 50억원 미만이더라도 공시 대상임. 자본금이 적은 회사의 경우 공시 대상 검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함.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요건

거래성격	거래상대방 ⁰¹	거래금액 ⁰²
자금, 유가증권, 자산	특수관계인 (ex. 국내계열회사, 동일인의 친족 등)	50억원 이상 or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 ⁰³
상품 또는 용역 (순익계산서상 매출에 계상)	동일인 측 20% 이상 출자회사 등 ⁰⁴ (ex. SK(주) 등 ⁰⁵)	분기별 합계액(매출, 매입 합산)이 50억원 이상 or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

⁰¹ 거래상대방에 해외계열사는 제외(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비영리법인·단체는 포함

⁰² 금액 산정 시 부가세 불포함

⁰³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 기준이며 새로 설립된 회사일 경우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⁰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20% 이상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

⁰⁵ SK그룹의 경우 SK(주), SK디스커버리 및 그 상법상 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 해당함('21년말 기준)

2/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1. SK계열 내 비상장회사*는 주요 경영활동이 아래 공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 (이사회 의결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은 제외

2. 중요사항 발생 전 사전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결 등 필요절차 이행과 적시 공시 필수.

구분	내용	공시기준	공시기한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변동사항	1% 이상 변동 시	사유 발생 7일 이내	
	임원의 변동사항*(등기부등본 기준)	발생 시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	자산총액 10%		
	타법인 주식(계열회사 제외)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자기자본 5%		
	증여	자기자본 1%		
	수증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자기자본 5%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			
	증자·감자 결정 또는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발생 시		
	영업양수·양도, 임대 등(변경/해지 포함), 회사 합병·분할, 주식 교환·이전, 해산	발생 시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 개시·중단 또는 종료 결정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및 임원의 변동사항 공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도 공시

3/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1. SK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개별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함(분기 1회 공시 * 원칙, 일부 항목의 경우 연 1회 공시).

* 분기 공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2·5·8·11월 말일) 공시

2. 기존의 공시 사항을 답습하지 말고, 매 공시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

구분	내용	공시기준	공시일정
일반현황	회사개요(회사명, 대표자, 영업업종, 종업원수 등)	지정일*	연 1회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국외계열회사 현황	지정일*	
	계열회사 변동내역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임원현황(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변동사항 등)	지정일*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 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지정일*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 주식소유 상세내역	지정일*	
	국내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거래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직전 분기말	분기 1회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 각 분기말**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상장	연 1회
		비상장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 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연 1회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현황	직전 분기말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현황	직전 분기말	분기 1회

* 당해 연도 상호출자재한기업집단 지정일, 통상 5월 1일

** 해외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구분	내용	공시기준	공시일정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연 1회
	계열회사간 재무보증현황		직전 분기말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직전 사업연도말	연 1회
	계열회사간 주요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순환출자 현황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거래현황	직전 분기말	연 1회
	국내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국내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지주회사 현황	지주회사 체재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지정일*	연 1회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직전 분기말	분기 1회
동일인의 국외계열회사 현황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주식소유한 국외계열회사	지정일*	연 1회
	- 일반현황(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 내용 등)		
	- 주주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 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회사		
	- 일반현황(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 용 등)		
	- 주주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 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		
	-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 해당 국외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통상 5월 1일

그 밖의 주요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1. 공정위는 매년 공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공시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2. 공시 위반 과태료는 위반행위(건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 Risk가 적지 않고,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의 필요.
3. **시정조치**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과태료**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



다음 질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공정위 공시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
관련 공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최근 다양한 공시감독기관이 각 기관별 목적에 따라 공시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Penalty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각 기관별로 공시의 대상 및 목적, Penalty가 서로 다르므로,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된 공시 의무의 개략적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유관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정위 공시는 계열회사간의 공정한 거래와 SK기업집단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한 것으로, 적시 이행을 위해 공시 의무가 예상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 Unit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SK그룹의 공정위 공시 위반사항은 주로 공시 항목 자체의 누락, 기재 오류 등 공시규정 사전 미검토 또는 실무담당자의 주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SKI계열의 경우 자회사 분할, 신규사업 추진 등 경영활동 다양화로 공시 관련 Risk가 높은 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항상 공시 Risk에 대한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계열회사
관련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시규정이
적용되나요?

해외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국내 계열회사를 위하여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포함).

다만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공정거래 Unit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거래대상과 동일
목적의 거래가 여러 차례
분할하여 거래될 경우,
거래 시마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동일 대상과의 동일 목적의 거래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총 거래의 규모가 공시 요건에 해당하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이행해야 하며, 분할 거래 시마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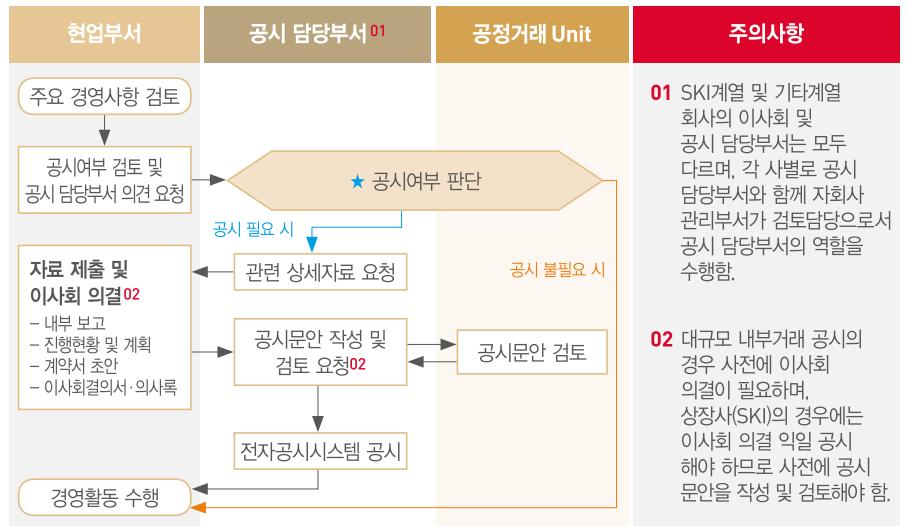
다만 공시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거래를 여러 번으로 분할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 행위로 보게 되고,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만약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등 거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 및 조건의 2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사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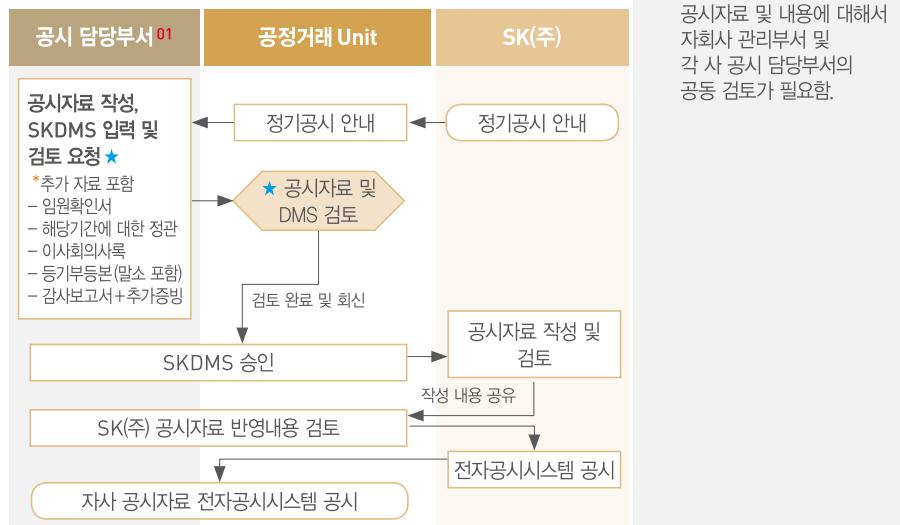
공정위 공시 업무 흐름도

첨부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수시공시)



|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정기공시)





SK이노베이션 계열 공정거래 가이드북

| 저 자 | SK이노베이션 공정거래 Compliance Unit

| 발행일 | 2022년 7월 1일

*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은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의 구성원들을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SK energy

SK geo centric

SK lubricants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on

SK earthon

SK이노베이션 계열 공정거래 가이드북

*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은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의 구성원들을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 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